

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

관리번호				처리기간	즉시
기본사항	성명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	
	①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 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%,100% 또는 80% 중에서 선택 합니다)	120%	100%	80%	
조정신청 내용	②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%,100% 또는 80% 중에서 선택 합니다)	120%	100%	80%	
	③조정하고자 하는 시기	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			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천징수의무자 귀하

작성방법

- "①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"란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방식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- "②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"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- "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"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